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73회 임시회>

2008. 10. 2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동 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개정 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안 제5조제3항 신설)

####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公務員은 住民전체의 奉仕者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확립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종교편향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환율상승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운행 줄이기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민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  
티브 제공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행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함.

### 4. 주요내용은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  
의 5를 경감(안 제16조의2)
-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  
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  
로 훼손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  
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  
하며, 기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

### 5.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 <개정  
1998.12.31>)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최근의 환율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자동차 세의 5%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승용차 요일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혜택수준이 최소한의 희생수준과 같거나 커야 군세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 감면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환율 상승과 고유가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안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 이유

- 청소년육성기금(8천만원)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기금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
-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조례로 명시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의 변경된 조항을 일치시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기금 관리 조항 삭제(안 제2조)
-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일부조항 개정(안 제17조)
-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제27조 · 제49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적립액은 8천만원으로 기금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사용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일반 장학금과의 중복으로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200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통·폐합 권고가 있음에 따라 달성군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 이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청소년기본법〉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책임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교통행정과장)
3. 제정 이유

○ 「교통안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2008. 1. 1)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책임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가. 조례 목적 · 기능(안 제1조,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 군수, 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 임기: 3년(연임가능)
- 다. 위원장의 직무 등 규정(안 제5조~제8조)

### 5.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08.1.1)함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기능은 5년 단위로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과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됨.

## 관 계 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축산과장)
3. 제정 이유

-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민속소싸움경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코자 함.

### 4. 주요내용은

- 소싸움 경기의 대회명칭과 개최지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소싸움 경기의 시행원칙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5.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2호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제3호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의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의 경우 소싸움 경기를 인정함으로써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 경기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싸움 경기에 대한 경기명칭 사용원칙, 개최지역의 범위, 소싸움 경기지역을 달성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내용에 근거하였으며, 소싸움 경기에 참여하는 싸움소의 운송·관리 등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보호대책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하지만, 조례안 제3조(경기명칭)와 제7조(소싸움 경기의 시행 횟수 및 방법)등의 세부조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학대행위 금지)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는 그 소속하에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소싸움경기장안의 질서 및 안전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2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